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53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민병덕 · 전진숙
김정호 · 백혜련 · 서영교
이언주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민간의료기관의 상당수가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제2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2조(필수의료 기반시설 강화 등) (생 략) <u><신 설></u> 제2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6. (생 략)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2조(필수의료 기반시설 강화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책 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 문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필 수医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 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다. 제28조(세출)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 료기관의 시설 · 인력 · 장비 등의 유지 · 운영 지원에 필요 한 경비 5. · 6. (현행과 같음)